

「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 택시 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규정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자동차의 차령(안 제7조의2)
 -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따른 운행연한을 규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이 개정(' 23.3.21.) 됨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 연장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총 1,748대(면허대수 : 법인택시 406대, 개인택시 1,342대)가 운행 중에 있으며 택시의 차령 만료 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,
- 신차 구매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, 택시 주행거리 제한을 통해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